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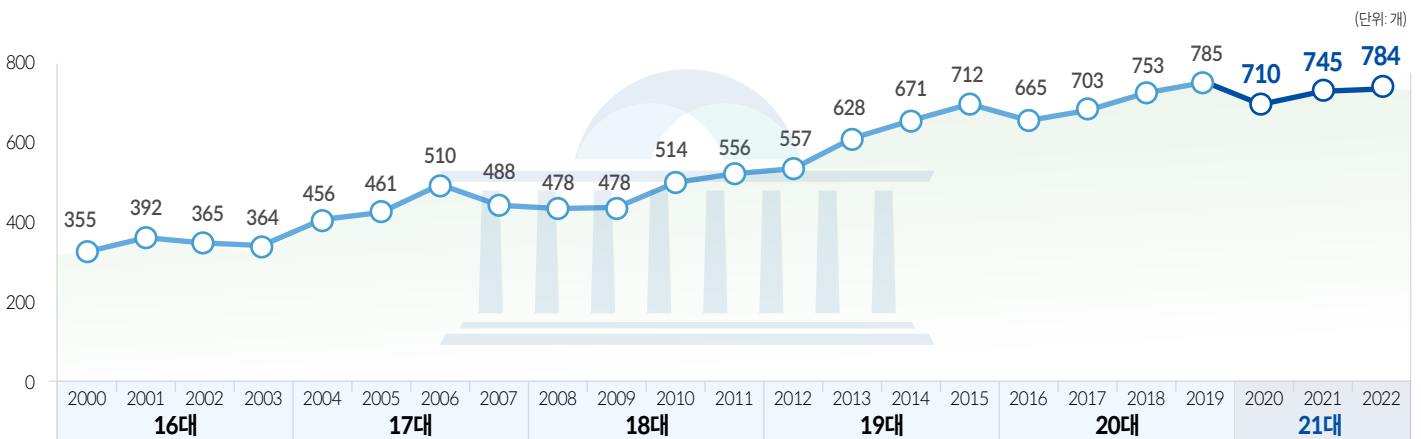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988년(제13대 국회)부터 2022년(제21대 국회)까지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평균 실시기간은 20일이다. 제21대 국회 기준으로 평균 740 여개의 기관을 감사하고 있어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상시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실시기관, 증인출석 현황, 서류제출 요구 건수 등 국정감사 관련 주요 데이터와 관련 법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살펴본다.

역대 국정감사 실시기관 (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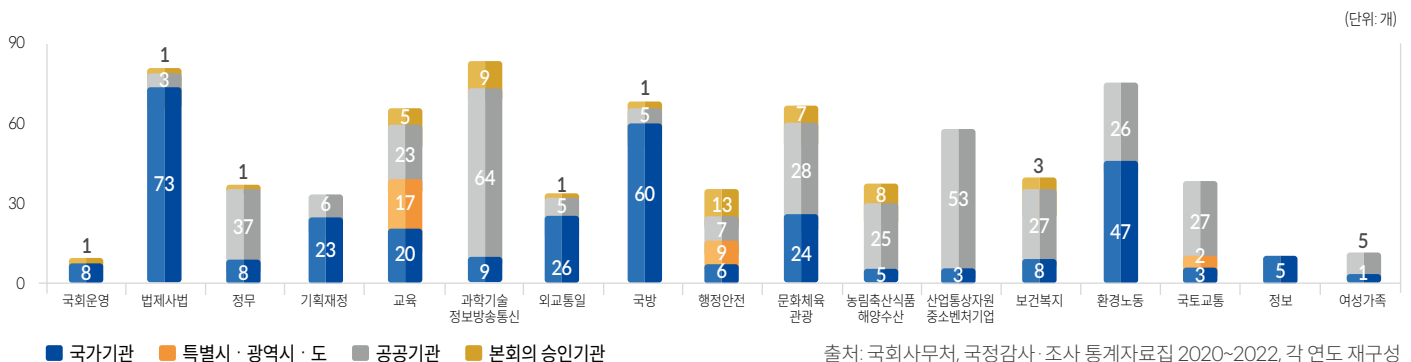


출처: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2020~2022 각 연도 재구성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 실시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실시기관 현황 (2020~2022)



출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2020~2022, 각 연도 재구성

발행처 국회도서관

발행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작성자 권수진(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 법학박사, 02-6788-4766)

김현아(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 02-6788-4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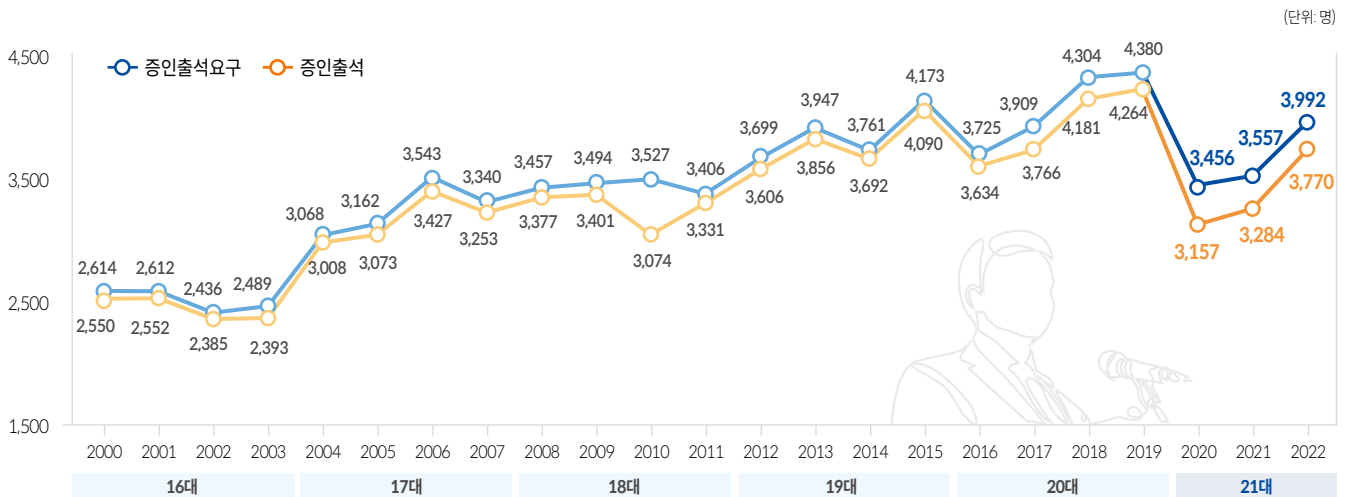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증인 출석 현황

■ 국정감사 증인출석 수는 증감이 반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며, 2000년(제16대 국회) 2,550명에서 2022년(제21대 국회) 3,770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감사의 증인출석요구 대비 증인출석률은 평균 98.7%이다.

[역대 국정감사 증인출석 (대수별)]



출처: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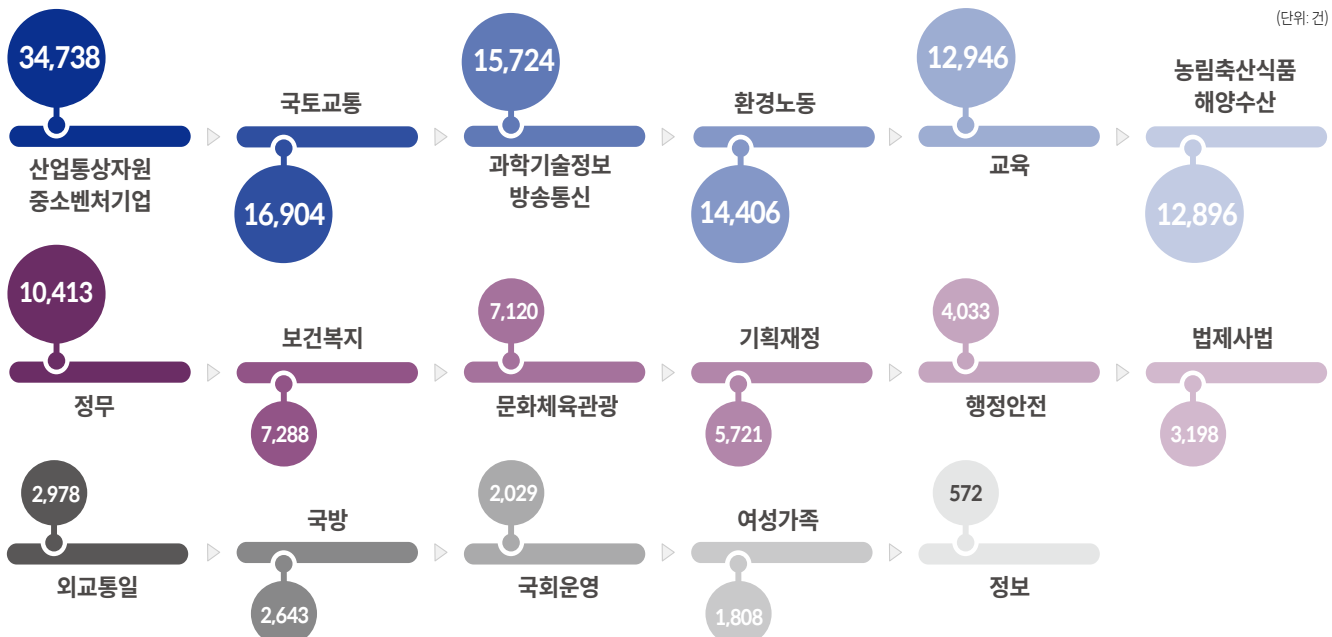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2020~2022 각 연도 재구성

서류제출 요구 건수

■ 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서류제출 요구 건수의 3년 평균값을 위원회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34,738건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위원회가 16,904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724건 순으로 많다.

[제21대 국회 서류제출 요구 건수(2020~2022)]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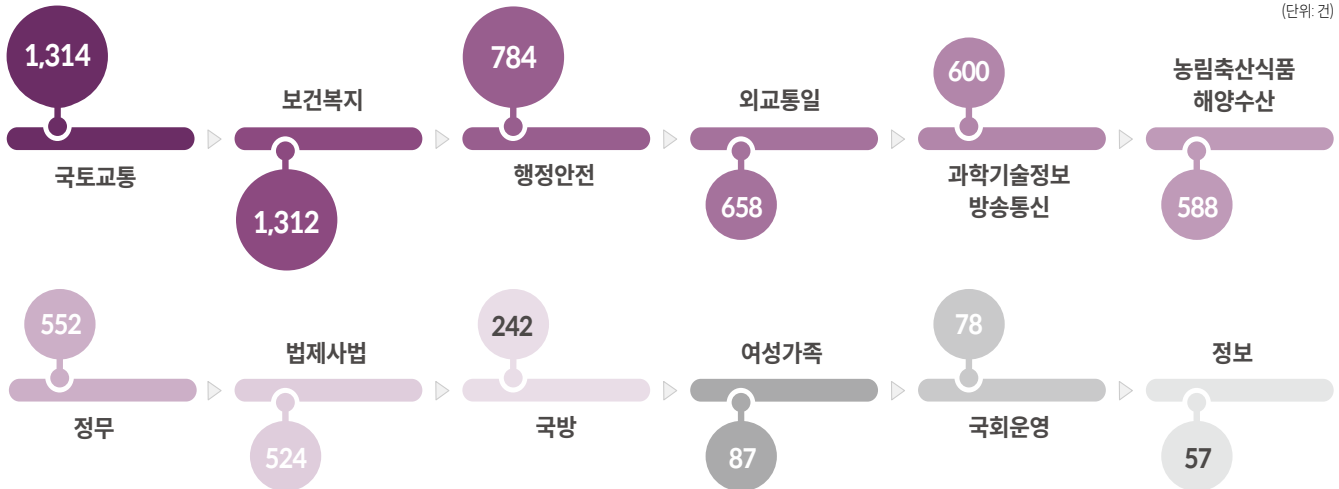
출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2020~2022, 각 연도 재구성

시정처리 요구 건수

- 국정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결과가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한다. 제21대 국회 시정처리 요구 건수의 3년 평균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314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원회가 1,312건, 행정안전위원회가 784건 순으로 많다.

[제21대 국회 시정처리 요구 건수(2020~2022)]

(단위: 건)



*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발행일 기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표에서 제외 또는 해당 연도의 수치를 반영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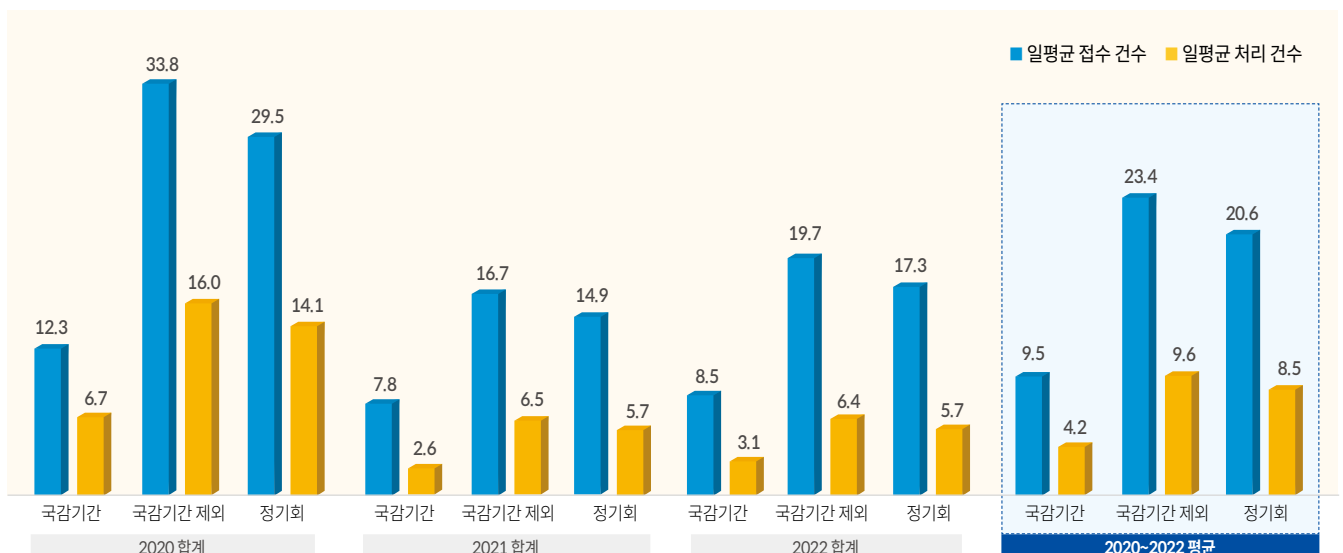
출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 2020~2022, 각 연도 재구성

국정감사 기간의 의정활동 현황

-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의 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등의 일평균 처리 건수는 4.2건이다. 이는 정기회 중 국정감사를 제외한 기간의 일평균 처리 건수인 9.6건의 44% 수준이다.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의 의정활동 현황(2020~2022)]

(단위: 건)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2020~20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국정감사)

-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 ⑤ 생략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② ~ ⑤ 생략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 ⑥ 생략

관련법률안

대표발의	주요내용
이재정의원[2118495]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신설).
이원욱의원[2118473]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 대상과 감사 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전용기의원[2113445]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한편,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경우 국정감사·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김원이의원[2112416]	상임위원회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2조).
이종배의원[2108679]	상임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를 도입하며,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9조의2 및 제16조).
조명희의원[2107580]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결과 등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 등에 예산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등).
김태년의원[2101929]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양금희의원[2101233] 김정재의원[2100630]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황보승희의원[2100958]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과 관련된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Data&Law」는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

국회법률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ISSN 2982-6241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